

## 주요 개정내용

- **【적용대상】**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
- **【적용시기】** '22.8.10.~'22.2학기까지(별도 개정 시까지)  
※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

# -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-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[제8판]

2022. 8. 10.

주요내용	제 7판	제 8판
마스크 착용	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	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,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※ 단,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·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※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례 제시
발열 검사	일일 2회 실시 (등교 시, 점심시간 전)	일일 1회 실시 (등교 시)
유증상자 검사용 신속항원검사도구 (키트) 지급	미지급	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(증상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)

■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 
: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, 일시적 관찰실 설치·운영, 소독·환기, 급식실 및 기숙사  
관리, 방역인력 배치,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, 외부인 관리, 상황 발생 시 관리  
요령(유증상자 발생 시, 확진자 발생 시) 등



교육부  
중앙방역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

# 목 차

## I. 대응 기본방향

- 1. 기본 원칙 ..... 1
- 2. 대응 및 협조 체계 ..... 1

## II. 학교 일상관리

- 1. 학교 환경관리 ..... 2
  - 방역자원 및 별도공간 ▪ 소독·환기 ▪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
- 2. 개인 방역관리 ..... 3
  - 방역수칙 ▪ 마스크 착용 ▪ 발열 검사 ▪ 외부인 관리

## III. 상황 발생 시 관리

- 1. 유증상자 발생 시 ..... 4
  - 학교 ▪ 학생 및 교직원
- 2. 확진자 발생 시 ..... 4
  - 학교 ▪ 학생 및 교직원

▪ 기존 참고자료(포스터 등) 및 서식 등은 이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음  
 ▪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(www.schoolhealth.kr) 또는 질병관리청(https://kdca.go.kr) 및 코로나-19(http://ncov.mohw.go.kr)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활용

## I 대응 기본방향

### 1 기본 원칙

-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(발열 검사, 환기, 급식실 칸막이, 일시적 관찰실, 방역인력, 소독)하면서, 그 간의 축적된 방역 관리역량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및 학교 자율성 강화
- 학교여건 등을 고려한 「학교 자체 방역관리 계획\*」에 따라 상황별 대응
- \* 학교 구성원 역할, 소독·환기, 발열검사, 일시적 관찰실 운영, 방역인력 활용, 방역물품 관리, 수업시간 관리, 급식실 운영, 기숙사 관리, 개인위생 교육 실시 등

#### <학교방역 관리 기본방향>

- ▶ (기본방역수칙 강조)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손 씻기, 환기·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 실천 및 개인위생 교육·홍보 강화
- ▶ (지속 가능한 예방관리)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단위학교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지속적·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, 기본 방역관리(발열 검사, 환기, 소독 등) 지속 실시
- ▶ (감염 취약 학생 관리) 학교 등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(이하 키트)를 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 안내 등 지원, 확진자의 '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' 대상 보건소 PCR 검사 권고 등 안내

### 2 대응 및 협조체계

- (학교 내) 학교장(원장 포함, 이하 같음)을 중심으로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, 학교 여건을 고려한 역할 분담 등 대응 체계 유지
- ※ '코로나19 담당자' 복수 지정,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예방 활동을 총괄
- (학교 외) 교육기관과 방역당국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신속 대응
- 학교-교육(지원)청-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응 방식 협의

#### <학교 내·외 대응 및 협조 체계>

역할	기관	기관	역할
· 학교별 계획 수립 및 예방 활동 · 평상시, 확진자 발생 시 대응	학교		
· 현황 파악 및 전파, 현장 지원 · 방역당국과 연락체계 유지	교육지원청	↔ 시군구 보건소	· 담당자 지정, 연락체계 유지 · 관할 지역 내 발생 현황 파악
· 현황 파악 및 전파, 현장 지원 · 지역 여건 고려 조치계획 마련 · 방역당국과 협력체계 유지	교육청	↔ 시도 질병청 권역센터	· 담당자 지정, 연락체계 유지 · 교육당국 상담 및 기술지원, 지침 전파 · 담당자 지정, 연락체계 유지 · 시도/교육청 협력체계 조기 정착 지원
· 지침 마련, 상황 총괄 관리	교육부	↔ 질병청	· 지침 마련 지원

## II 학교 일상관리

### 1. 학교 환경관리

#### 1) 방역자원 및 별도공간

- (방역물품)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물품(체온계, 마스크, 손소독제 등)을 충분한 양 확보하고 관리상태\* 지속 확인  
\* 체온계 정상작동 여부, 마스크·키트 등 유효기간 확인 및 위생관리 상태 등
- (방역인력)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내 방역활동(급식실·특별실 등 포함) 지원을 위한 전담 방역인력 적극 활용
- (일시적 관찰실) 코로나19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
※ 1층 마련이 원칙, 어려운 경우 층간 이동 최소화 및 신속 귀가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

#### 2) 소독·환기

- (소독) 개인물품, 공용공간, 통학버스, 기숙사 등 청소·소독 강화  
- 일상적 공간 주기적 청소,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
※ 「감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」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
- (환기)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, 기상 상황 및 냉난방기 가동 등으로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(10분 이상 권고) 수시 개방  
※ 학교 내 공용공간, 통학버스, 기숙사 등 주요 공간에서도 환기 강화

#### 3)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

- **【급식실】** 감염예방을 위한 식사환경 조성 및 급식방역 관리 내실화  
- (식사환경)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,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·기구 매일 청소·소독, 식사시간 모든 창문 상시 개방, 식사지도 강화\*  
\* 손 소독, 식사 시 대화 금지,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, 식사 전·후 마스크 착용 등  
- (종사자 관리) 건강상태 매일 확인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, 급식 종사자 격리 대비 급식 대체인력 운영\* 및 관리 강화  
\* 대체인력을 구성·운영, 교육(지원)청 대체인력 채용·지원,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지원 검토
- **【기숙사】**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, 기숙사생 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  
- (시설환경) 기숙사 내 공용공간(독서실, 면학실, 정보검색실, 휴게공간 등)을 개방할 경우 칸막이 설치, 충분한 거리 확보(좌석 띄우기 등) 및 환기·소독 등 철저  
- (입사생 관리) 매일 1회 이상 발열 등 확인, 취침 공간 외 마스크 착용 철저, 집단 간식섭취 자제, 외부인 출입은 가급적 제한  
※ (기숙사) 유증상자가 '음성'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(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)

## 2. 개인 방역관리

### 1) [방역수칙]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·홍보 강화

-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, 손 씻기,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, 가정과 연계한 생활수칙 홍보 등 실시

《(권고) 개인방역 6대 수칙(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제6-1판), 중앙방역대책본부)》

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,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 ④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⑤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,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- ※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·안내  
\*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 등 참고
- ※ 기저질환자가 등교(출근)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인정을 통해 출석(병가) 인정 가능  
(학생 출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」 참고)
- ※ 학생·교직원 본인의 건강 상태 매일 확인 및 자기진단앱 참여(권고) 등 지속 관리 필요

### 2) [마스크 착용]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,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\*,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\*\* 착용 권고

- \* 단,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는 마스크 착용 의무
- \*\*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
- ※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5판), 중앙방역대책본부」 참조

《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(중앙방역대책본부)》

① 발열,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
② 코로나19 고위험군(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)인 경우  
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,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
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(15분 이상 등)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, 합성·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

- ※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
- ※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

### 3) [발열 검사] 등교 시 모든 학생·교직원 대상 발열 검사 실시

· (내용) 등교 시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·교직원 대상\*으로 실시하고, 가급적 실외에서 검사  
\* 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, 통학버스 운전기사, 통학지도 교사, 이용 학생 등은 탑승 전 발열 검사 실시  
· (방법) 비접촉식 체온계,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 검사하고, 1차 결과 37.5°C 이상 발열 확인 시 일정 시간 안정을 취한 후 고막 체온계로 재측정(37.5°C 이상 발열 확인 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)

### 4) [외부인 관리]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하되, 학교 출입 시에는 발열, 기침 등 유증상 여부 확인 후 방문 허가 권장

- ※ 방문객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·안내
- ※ 매점, 청소, 경비 등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은 교직원의 건강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

### Ⅲ 상황 발생 시 관리

#### 1 유증상자 발생 시

- (학교)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(KF80 이상)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,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·검사 안내
  - ※ 학교 등에 비치된 키트를 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 안내 등 지원
  - ※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(출근)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및 검사(자가검사, 의료기관 방문 등)를 실시하도록 안내
- (학생·교직원)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(자가검사\*, 의료기관 방문 등) 또는 진료 실시, 검사 결과 '음성'이면 등교(출근)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·검사 실시(권고)
  - \* 자가검사 결과 '양성'이면 의료기관,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

#### <유증상자 방역수칙>

보건용 마스크(KF80 이상) 상시 착용,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 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#### 2 확진자 발생 시

- (학교)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\* 등 관리 철저
  - \* 소독제로 천(형겔 등)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, 깨끗한 물로 적신천(형겔 등)으로 표면을 닦음(소독제 종류별 사용법 준수)
  - ※ 「감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」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
- 확진자의 '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'는 필요시 "학교장 확인서"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(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)
- (확진자)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(7일 의무) 및 수칙 준수

#### <확진자 방역수칙>

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 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, 사적모임 자제

- ※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, 동거인(학생 및 교직원)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(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, 음성시 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)
  - ↳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
- ※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